

##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

의안 번호	138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7. 9. 6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건에 대하여 중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※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제54호(2015.12.31)

### 2. 주요내용

가. 정원 총수: 23명 → 30명 (증7)

나. 직급별 정원조정

- 1) 임원: 1명 (변동없음)
- 2) 일반직: 9명 → 16명 (증7)
  - 4급: 1명 → 2명 (증1)
  - 6급: 2명 → 3명 (증1)
  - 7급: 2명 → 7명 (증5)
- 3) 업무직(무기계약직): 13명 (변동없음)

3. 근거법규: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제3항

4.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: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1부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				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
〈별표 2〉 정 원 표											〈별표 2〉 정 원 표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계	임 원	일 반 직							업 무 직			구 분	계	임 원	일 반 직							업 무 직									
			3급		4급	5급	6급	7급	3급							4급	5급	6급	7급													
			소계	행정	행정·기술	행정·기술	행정·기술	행정·기술	행정·기술							소계	행정	행정·기술	행정·기술	행정·기술	행정·기술											
계	23	1	9	2	1	1	1	2	2	2	2	2	2	2	2	3	7	13	계	30	1	16	2	1	1	1	2	2	3	7	13	
경영 사업 팀	9	1	5	1	1		1	1	1	1	1	1	1	1	1	1	1	3	경영 사업 팀	9	1	5	1	1		1	1	1	1	1	1	3
시설 관리 팀	14		4	1		1		1	1	1	1	1	1	1	1	2	6	10	시설 관리 팀	21		11	1		1	1	1	2	6	10		

## 정원관련 근거법규

□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7조(감독)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.

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2. 인사규정, 임직원의 보수규정(연봉제규정, 복리후생규정 포함) 및 퇴직금규정(명예퇴직규정 포함)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#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

(제정) 2013. 2. 18 규정 제2호  
(개정) 2014. 1. 2 규정 제30호  
(개정) 2014. 10. 23 규정 제39호  
(개정) 2015. 9. 22 규정 제43호  
(개정) 2015. 12. 31 규정 제54호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의 직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및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직제의 개편)** 공단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·개편·폐지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 2 장 구 성 원

**제4조(구성원)** 공단에 이사장·비상임이사·감사 및 직원을 둔다.

**제5조(이사장)**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**제6조(비상임이사)** 공단에 비상임이사 8명을 두며, 비상임이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4. 10. 23>

**제7조(감사)** ①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일반 업무를 감사하고,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.

② 감사는 울산광역시중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의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<개정 2015. 12. 31.>

**제8조(직무대행)** 이사장 유고시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구의 행정지원국장, 건설도시국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9조(직원)** ① 직원은 일반직(계약직 포함)과 청원경찰·업무직으로 구분한다.<개정 2015. 9. 22>

② 일반직의 직급은 3급부터 7급까지로 한다.

**제10조(고문 및 자문위원 등)** 공단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.

### 제 3 장 조 직

**제11조(기구)** ① 공단에 경영사업팀, 시설관리팀을 둔다.

② 공단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.

**제12조(직위·직급)** ① 제11조의 경영사업팀장, 시설관리팀장은 각각 일반직 3급으로 보한다.

② 일반직 3급은 팀장, 4급은 차장, 5급은 대리라 하고, 6급 이하 직원은 주임이라 한다.

③ 4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에게 직급별로 직상급자의 직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.

**제13조(정원)** 공단의 팀별,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

### 제 4 장 사 무 분 장

**제14조(경영사업팀)** 경영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14. 1. 2>

#### 1. 기획·조정

- 가. 경영혁신 및 경영평가 총괄관리
- 나.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, CEO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- 다. 경영목표설정 및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
- 라. 중·장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
- 마. 회계연도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
- 바. 신규 사업 발굴 및 타당성 분석
- 사. 심사분석 및 경영분석의 종합평가
- 아. 사업관련 및 업무와 관련된 법규의 검토, 조사, 연구
- 자. 정관, 규정, 내규의 제정 및 개폐·공포에 관한 사항
- 차. 각종 회의소집 및 운영과 이사회·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업무
- 카. 이사장 지시사항 처리
- 타. 구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관련 업무총괄
- 파. 제안제도 관련 업무

#### 2. 홍보

- 가. 대외홍보·보도 관련 사항
- 나. 간행물(홍보물) 제작·배부
- 다. 제반 행사에 관한 사항

#### 3. 회계·예산

- 가. 예산의 편성, 배정, 집행, 통제 등 관련업무
- 나. 결산, 회계감사 및 자금운용관리
- 다. 자본금 출자 및 증자 관련업무

- 라. 공사, 용역, 물품의 계약 관련업무
- 마. 자금수급계획 관련업무
- 바. 원가분석 및 심사분석 관련업무
- 사. 수입금 관리업무 총괄

4. 노무·인사·복지

- 가. 직제기구의 설정
- 나. 정원책정기준 설정
- 다. 정원·현원 관리
- 라. 직원의 인사, 교육, 복무 등 관련업무
- 마. 직원의 급여, 복리후생, 퇴직금 등에 관한 업무
- 바. 문서, 공인관리 및 보전
- 사. 노무 및 송무 관련업무
- 아. 직원의 대내외 포상, 징계에 관한 업무
- 자. 예비군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

5.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(자체감사, 상부기관 감사)

6. 고객관리 관련업무

7. 재산관리

- 가. 재물조사 관련업무
- 나. 자산증감 관련사항
- 다. 물품수급 및 사무장비 관리운영
- 라.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
- 마. 공단청사관리에 관한 사항
- 바. 보안 및 당직관리, 비상계획 관련

8. <삭제 2014. 1. 2.>

9.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관련업무

10. 쓰레기종량제봉투 운영인력 관리 및 교육<개정 2014. 1. 2.>

11.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 요금에 관한 사항<개정 2014. 1. 2.>

12.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입금관리 관련업무<개정 2014. 1. 2.>

(징수 및 결산, 체납관리, 수입금 증대방안 등)

13. <삭제 2014. 1. 2.>

14.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15. 전산<신설 2015. 12. 31.>

- 가. 공단 홈페이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홈페이지 운영
- 나. 전산기기 운영 관련사항
- 다. 업무의 전산화 개발 관련사항
- 라. 자료관리 업무

**제15조(시설관리팀)** 시설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14. 1. 2>

1. 유료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
2.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및 운영
3. 중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

4. 유곡테니스장 유지·관리 관련업무
5. 십리대밭축구장 유지·관리 관련업무
6. 함월구민운동장 유지·관리 관련업무
7. 성안생활체육공원 유지·관리 관련업무
8. 공단 체육시설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9. 공단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비품관리,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10. 공단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인력관리 및 교육
11. 공단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
12. 공단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수입금관리 관련업무  
(징수 및 결산, 체납관리, 수입금 증대방안 등)
13. <신설 2015. 12. 31.>

**제16조(사무분장의 조정)** ① 팀 단위 소속직원별 사무분장은 해당팀장이 정하고, 사무분장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각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.

③ 각 팀은 상호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·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직무수행과 책임)**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.

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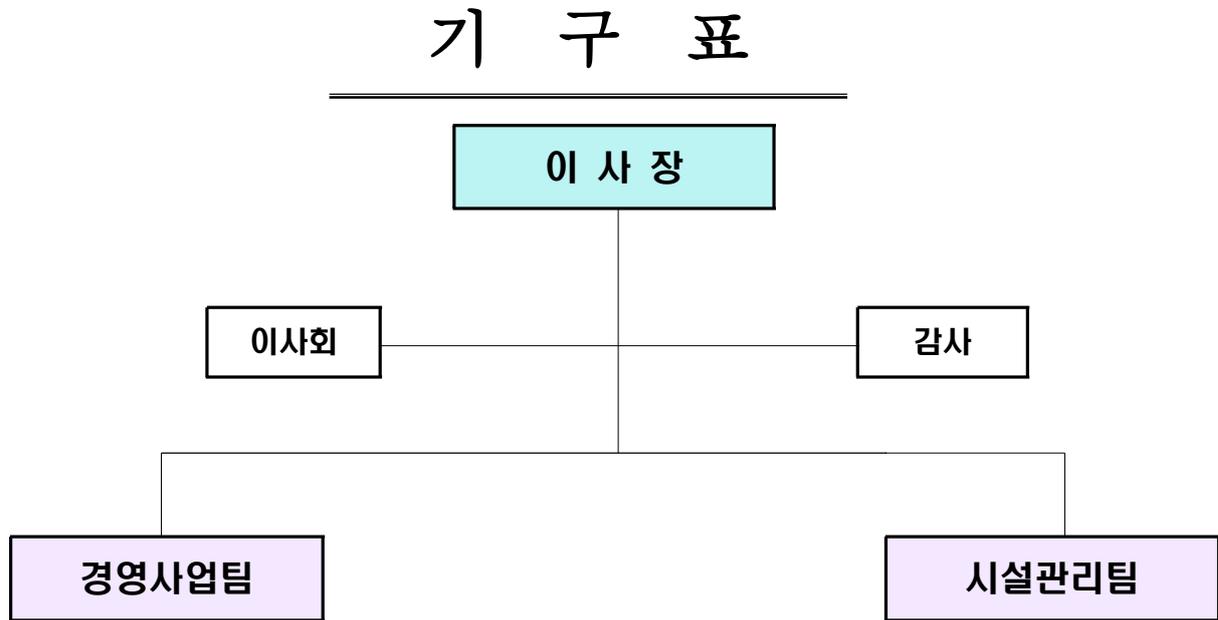
**제18조(규정의 개정)**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【별표 1】



【별표 2】 <개정 2014. 1. 2>  
<개정 2015. 9. 22>

## 정 원 표

구 분	계	임원	일 반 직								청원 경찰 · 업무직
			계	3급		4급	5급	6급	7급		
				소계	행정 · 기술	행정 · 기술	행정 · 기술	행정 · 기술	행정 · 기술		
계	23	1	9	2 (2)	1 (1)	1 (1)	1 (1)	2 (1)	2	2	13
경영사업팀	9	1	5	1 (1)	1 (1)		1 (1)	1	1	1	3
시설관리팀	14		4	1 (1)		1 (1)		1 (1)	1	1	10

※ ( )는 계약직과 복수직임.

의안  
번호

1384

[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]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9. 6.(수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8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9. 19.(화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기획예산실장 김혜경)

### 가. 제안이유

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정원 총수 : 23명 ⇒ 30명(증 7명)
- 2) 직급별 정원조정
  - 총 계 : 23명 ⇒ 30명(증 7명)
  - 일반직 : 9명 ⇒ 16명(증 7명)
    - 4급 : 1명 ⇒ 2명(증 1명)
    - 6급 : 2명 ⇒ 3명(증 1명)
    - 7급 : 2명 ⇒ 7명(증 5명)

다. 근거법규 :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제3항

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영환)

본 동의안은 2017. 7. 25. 한국석유공사 체육시설(수영장, 테니스장) 위탁 운영 협약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